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 
조례안  
심사보고서

2022년 12월 1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1월 10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2월 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송오섭)

- 가. 제안이유
  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8489호, 2021. 10. 19. 제정, 2023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  - 답례품의 종류(안 제2조)
  -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(안 제3조 부터 제4조)
  -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5조 부터 제7조)

- 고향사랑기금의 설치·운용(안 제8조 부터 제12조, 제24조)
-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(안 제13조 부터 제23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조례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(2022.09.16.)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한 것임.
- 조례의 시행 초기에는 홍보와 답례품 선정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판가름할 수단이 될 것임으로 우선적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조사와 발굴에 착수해야 할 것임.
- 시행령 제7조에서 “법령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할 때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”라고 규정해 기존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향후에는 모금된 기금이 어떠한 사업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적극 공개해, 기부자가 기부의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기부와 미담 사례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